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6.6.14.(화) 15:00 이후	배포	
책임자	-		담당자	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사무관 최 지 은 (02-2100-2632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구 경 모 (02-3145-8020)			은행제도팀장 김 용 태 (02-3145-8030)
	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설 인 배 (02-3145-5700)			총괄기획팀장 김 호 종 (02-3145-5688)
	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부장 윤 성 은 (02-3705-5704)			여신제도부 계장 양 지 훈 (02-3705-5423)

제 목 : '대출계약 철회권' 시행 방안

1 | 시행 배경

-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, 법 시행 전 도입가능한 제도의 선제적 도입을 추진
-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추어,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'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' (이하 '대출계약 철회권')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(15.9월)
- 이후 은행권 TF 운영 및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 방안 도출

√ '대출계약 철회권'의 의의

- ◇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, 대출금리·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

◀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 ▶

- ① (행사절차)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
- ② (적용대상 및 상품) 개인 대출자 / 신용·담보 대출
- ③ (소비자에 대한 효과) 중도상환수수료 면제, 대출정보 삭제

(의의)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

* 중도상환수수료 면제,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 삭제

(적용대상) 개인 대출자

*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'개인' 대출자

(적용상품) 리스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하 모든 대출
(신용 : 4천만원 ↓, 담보 : 2억원 ↓)

(행사절차)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* 철회의 의사표시**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

* 계약서(이에 준하는 것 포함)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기산

** 행사수단 : 서면, 전화, 컴퓨터통신 등

○ 소비자 권리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최초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 계약 철회권에 대해 설명 의무 부여

(행사요건) 원리금 상환 + 부대비용* 반환

* (소비자)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, 세금 등 (금융회사) 한도약정대출(마이너스 대출)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

(신용정보관리) 금융회사·신용정보원·CB 등 대출정보 삭제

3

기대 효과

- (금융소비자)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·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,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 절감
- (금융회사)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(금리, 수수료 등)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

4

향후 일정

- 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,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(6월중) → 4분기 시행 예상
- 은행권 이외의 금융당국 감독·검사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* 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효과(중도상환수수료 면제, 대출정보 삭제)를 감안, 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

* 보험, 여전, 저축은행, 신협 및 주택금융공사 등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